

-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은 [2022.08.16.(화)]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조건(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 본 주택의 청약 자격은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6.(화)] 현재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2021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 본 주택은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0.12.29.(화)] 당 사업지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1. 잔여 세대 공급내역

■ 공급 규모 : 495세대 중 잔여 228세대

■ 잔여 타입 공급내역

유형	타입	공급세대수	비고
일반공급	84A / 84B / 84C / 84D / 84E 84F / 84G / 84H / 84I / 84J	173	청약자격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와 동일
	84K / 84L / 84M / 84N 84O / 84P / 84Q / 84R	55	
합계		228	

* 세부 타입선택 불가(추첨의 방식에 따라 타입 선정)

2. 계약조건 및 임대보증금

구분	계약금(1차)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
납부금액	1,000만원	10%이내 차액	40%	50%
납부시기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2.11.21	입주시

* '22.11.21 시행 예정인 중도금 대출은 HF(주택금융공사)보증을 받고 있으며, 최대 2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 세대별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이 시행됩니다. 기준에 HF보증을 받은 대출내역이 있으신 분께서는 **최대 대출한도에서 대출내역이 있는 만큼의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대출 금융기관 확인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주요 일정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	비고
일정	'22.08.22(월)~23(화) 10:00 ~ 17:00	'22.08.26(금) 12:00	'22.08.29(월)~31(수) 10:00 ~ 17:00	- 추첨 전문업체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등·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임차인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유형별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추첨		-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계약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장소	당사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	당첨자 별도 안내	

4.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212,113원	4,844,370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2순위 (110% 이하)	3,533,324원	5,328,806원	7,060,423원	7,920,890원	8,058,679원	8,557,808원	9,056,936원	9,556,064원
3순위 (120% 이하)	3,854,535원	5,813,243원	7,702,279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증·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 / 특별공급)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유형별	공통서류	○	건강보험자격 특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분양사무실 비치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청년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공급 유형별	부모의 소득 관련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분양사무실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고령자	○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예비배우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	• 분양사무실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6.(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